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55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12일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토론회 신청서 제출 마감기한이 개최일로부터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긴급·시의성 있는 토론회 추진 필요시 적기에 토론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절차적 제약이 발생함.
- 나. 이에 제출 기한을 ‘개최일로부터 20일 전’으로 조정하여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토론회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토론회 개최승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최일로부터 ‘30일 전’에서 ‘20일 전’으로 완화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
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등 을”을 “등을”로, “개최 일로부터 30일”을 “개최일로부터 2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등 개최”를 “등의 개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신청 및 승인) ① 위원회, 의 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<u>등</u> 을 개 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 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 청서를 <u>개최 일로부터 30일</u>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.	제4조(신청 및 승인) ① ----- ----- ----- <u>등을</u> ----- ----- ----- - <u>개최일로부터 20일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<u>등 개최</u> 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 시, 장소, 안건,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 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야 한다.	③ ----- <u>등</u> <u>의 개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